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 20 -----김재영 의원의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0. 1. 21
다. 상 정 일 자 : 2000. 1. 29(제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 의원)

가. 제안이유

'99.8.31 지방자치법과 '99.12.3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중에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지급하는 회의수당 등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에는 매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55만원으로 개정 지급.
-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 일액 5만원을 회기수당 일액 7만원으로 개정 지급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가 있는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액을 감하여 회기수당을 지급.
-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시에 지급하는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이 '99. 8. 31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도 개정 공포되어 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액 개정과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회기수당일액 지급액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등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건이므로 다른 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등의 지급은 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는? (강정순의원 질의)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김재영의원 답변)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인 상한선과 회기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김주석의원 질의)

⇒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이내, 회기수당은 일 7만원이내, 여비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정하고, 회기수당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에 회의가 있는 날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를 빼고 회기수당을 지급함.(김재영의원 답변)

○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의회관련 조례 정비 등 조치해야할 사항은? (장용회의의원 질의)

⇒ 의정활동비관련 조례개정, 결산검사위원회관련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행정사무감사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함.(김재영의원 답변)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